

2020년 1/4분기 예비비 지출보고

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
 -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예비비 집행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집행액	집행내역	집행사유
서울지하철 9호선2단계 917공구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 판결금 지급	3,77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출일 : '20.3.13. ○ 지급대상 : 지에스건설(주) (주케이씨씨건설) ○ 지출사유 : 판결금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시가 1심 판결에서 약81.3% 승소하였으나, ○ 일부패소(약18.7%)에 대한 집행을 명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에는 판결일로부터 연12%의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있어, ○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

□ 사건개요

- 사건번호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569396(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)
- 당사자 : 원고 지에스건설(주) 외 1, 피고 서울특별시 외 1
- 소 가 : 금15,686백만원
- 사건내용
 - 피고 서울특별시의 지시에 따른 이 사건 설계변경(정거장 위치 이동)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
 - 공기단축 지시에 따른 추가공사비(소위 “돌관공사비”) 청구
 -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등

◆ 공사 개요 ◆

- ▶ 위 치 : 강남구 삼성동(광동한방병원)~송파구 잠실동(아시아선수촌APT)
- ▶ 사업기간 : '08. 6 ~ '14. 12
- ▶ 총 연 장 : 1.590km
- ▶ 계약금액 : 111,103백만원
- ▶ 계약업체 : 지에스건설(주) 75% + (주)케이씨씨건설 25%

□ 추진경위

- '15. 11. 4. : 소장 접수(서울중앙지방법원)
- '16. 1. 14. : 서울시 답변서 제출('16. 3. 10 대한민국 답변서 제출)
- '16. 3. ~ '20. 1. : 1차 ~ 14차 변론
- '16. 4. 7. : 원고측 감정신청서 제출
- '16. 5. 26. : 감정인 지정 결정(기술법인 단평(주), 서동욱)
- '16. 6. ~ '19. 2. : 감정인 감정 평가, 감정서에 대한 원고·피고측 사실
조회 신청서 제출, 감정인 감정보완 회보서 제출
- '17. 11. ~ '19. 9. : 원고·피고측 증인신청 및 신문
 - 당시 현장소장('17.11.8.), 공무팀장('18.11.21, '19.1.30), 감리단장('19.9.18)

- '19. 12. 3. : 원고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
 - 소가 변경 : 당초(금402백만원) → 변경(금15,686백만원)
- '20. 2. 19. : 1심 판결 선고(우리시 약 81.3% 승소)
- '20. 3. 4. : 항소장 제출(원고(지에스건설) → 법원)
- '20. 3. 9. : 항소장 제출(피고(서울특별시) → 법원)
- '20. 3. 13. : 1심 판결금 가지급(3,770백만원)

□ 소송결과

구 분	1 심 (2015가합569396)	비 고
선고결과	서울시 일부 승소(81.3%)	
선 고 일	'20. 2. 19.	
판결요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적법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(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)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하여야 함. · 따라서, 8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한 이후에 계약금액 조정 요청 하였으므로 1~8차수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부분은 부적법함. -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, 간접공사비, 미지급 공사대금 (지체상금) 청구 일부 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9차수 계약 중에 이루어진 계약금액 조정신청만 인정함. · 간접공사비와 관련 9차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,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합함. · 10차수 공사와 관련 원고들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지체상금 부과는 부적합함.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수별 공사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~8차 공사 : '08. 6. 2. ~ '13. 2. 21. · 9차 공사 : '13. 3. 8. ~ '14. 11. 28. (준공대가 지급일 : '15. 1. 20.) · 10차 공사 : '14. 11. 27. ~ '14. 12. 31. ※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 : 1차('13.10.31.), 2차('14.11.27.) </div>	
판 결 금	3,770백만원('20. 3. 13. 가지급)	

판결금 지급 현황

○ **가지급금 지출**

- 지급금액 : 3,769,556,627 (원금+이자)
- 재원부담 : 예비비

(단위 : 원)

구 분	원 금	이 자	계	비 고
판결금	2,942,148,853	827,407,774	3,769,556,627	

※ 지급사유 : 원심판결일로부터 연12%의 고율이자 발생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

향후계획

-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조하여 2심 소송에 적극 대응